

2024년 상반기 고문변호사 법률 자문 현황

구분	순번	자 문 내 용	비고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	1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항소제기 여부 등 대응방안	
	2	국유지 환급금 상계관련 법률 자문	
	3	개인정보 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	
	4	미인가 교육시설 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	
	5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및 제5항 위반 관련	
	6	공유재산(토지) 법정도로화에 따른 무상귀속 및 관리주체에 대한 법률 자문	
	7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법률 자문	
	8	「○○초 이전에 따른 학교부지 조성 및 신축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서」 관련 법률 자문 요청	
	9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지급 방법	
	10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및 형법 제307조 관련	
	11	공유재산 관리비 지급 의무에 대한 법률 자문	
	12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사무처리 관련	
	13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수당에 대한 과세 및 과세율 판단 여부	
	14	형법 제287조 관련	
	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석 요청	

구분	순번	자 문 내 용	비고
	1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	
	17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중 유관기관의 범위	
	18	재개발정비사업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 관련 법률 자문 요청	
	19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법률 자문	
	20	○○구역 학교시설 기부채납 관련 법률 자문	
	21	사립 대안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관련 사무처리 지원 권한 존재 여부	
	22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기관 행정서류 미제출 건	
	23	행정조사에서 취득한 자료를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24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기관 행정서류 미제출 건	
	25	공사계약해지에 따른 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	
	26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관련 법률 자문 요청	
	27	학원법령 해석	
	28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운영 관련 법률 자문 요청	
	29	전문상담사 채용 취소 관련 법률 자문 요청	
	30	일반재산 무단점유 처리 관련 법률 자문 요청	

구분	순번	자 문 내 용	비고
	31	사립유치원 적립금 사용 관련 자문 요청	
	32	행정조사에서 취득한 자료를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3	공사계약해지에 따른 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자문요청	
	34	사립학교 수익자부담경비 관련	
	35	행정조사에서 취득한 자료를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6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관련	
	37	세탁물 위탁처리업체 화재에 따른 피해보상과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	
	38	통학버스 계약과 관련한 업체의 협박성 민원	
	39	온비드 입찰 계약 체결 후 물량 차이로 대금 일부 반환 요구 시 지급 여부	
	40	민원인의 학교 CCTV 증거보존 요청과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	
	41	제3자단가계약 취소여부	
	42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4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보관 관련 법률 자문	
총계		43건	

※ 동일한 자문내용에 대해 2명 이상의 고문변호사에게 자문받은 경우는 1건으로 간주

법 률 자 문 결 과 보 고 서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1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항소제기 여부 등 대응방안	<input type="checkbox"/> 가해교사 개인의 항소여부를 배재하고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 조치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을 주장한다면 항소심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가해교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경우 어느 정도 보전을 받을 수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당해 불법행위에 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피용자의 선임 및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거나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것을 주장. 입증하면 이론상 면책이 가능하나, 판례는 이에 관한 사용자의 주장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함. <input type="checkbox"/> 사무감독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상당한 정도로 기울였음이 밝혀지고 그 과실이 극히 미미하다고 인정된다면 손해 배상액에 대해 거의 전액에 가까운 금액을 보전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가해교사의 불법행위가 정당행위로 인정되기에는 무리가 있어 교육청의 책임이 완전히 면책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input type="checkbox"/> 가해교사의 직무내용, 불법행위의 상황, 손해발생에 대한 기여정도, 평소 근무태도, 불법행위의 예방이나 손실분산에 관한 귀청의 배려의 정도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신의칙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input type="checkbox"/> 이 사건은 가해교사가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로 법령을 위반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교육청이 아동학대 예방 및 사후 조치에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이 인정되더라도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이 사건 사고 이후에도 가해교사가 한동안 수업을 담당하여 피해자와 마주칠 수밖에 없었던 점은 교육청의 과실로 볼 여지가 있으나, 그 범위를 명확히 하기는 어려움.</p>
2	국유지 환급금 상계 관련 법률 자문	<p><input type="checkbox"/> 반환할 의무가 있는 대부해지 환급금을 반환하지 않고 변상금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교육청의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한 대부해지 환급금은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사법상의 계약에 터잡은 청구권으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교육청에 대하여 부과한 변상금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교육청에 대한 대부해지 환급금 채무와 상계하는 것은 그 성질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변상금 채권과 대부해지 환급금 채권은 모두 금전채권 동종의 채권임. 두 채권은 상계가 금지(성질상, 약정상, 법률상)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임. 어느 일방은 상대방에게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여 상계처리할 수 있다고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두 당사자 사이에 상계금지 특약이 없으면 상계 가능</p>
3	개인정보 사무처리와 관련한 자문 요청	<p><input type="checkbox"/> 인천시교육청과 MS사와의 개인정보 위·수탁 관계 성립 여부</p> <p>- '본사건과 관련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다'라는 주장의 타당성 여부</p>	<p><input type="checkbox"/> 교육청이 개인정보처리자라는 주장이 타당하고 보기는 쉽지 않음.</p> <p>- 교육청은 MS가 제시한 구매 조건에 따라 오피스365 서비스를 관내 교직원 및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수행한 점, 개인정보의 취득 목적과 방법, 이용 필요가 있는 자가 교육청이 아닌 점 등을 종합적으로</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고려하면, 개인정보처리자가 교육청이라는 주장이 타당하다고 보기는 쉽지 않음</p> <p><input type="checkbox"/> 교육청이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피스365(https://o365.ice.go.kr)의 도메인이 교육청을 명시하고 있고, 이 사이트를 통하여 생성되는 사용계정 주소가 o365.ice.go.kr이라면 교육청이 단순히 안내 역할만을 수행한다거나, 교육청의 업무가 아니라는 의견은 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 - 교육청이 MS사에 사이트의 운영을 위탁함으로써 소속 학생 등에게 SW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소속 학생 등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p><input type="checkbox"/> 교육청의 관련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개인정보처리자는 MS라고 할 것</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청은 MS가 제시한 구매 조건에 따라 MS가 구축, 관리,제공(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포함)하는 서비스를 관내 교직원 및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 역할을 수행했을 뿐, 서비스의 사용활성화(사용자 증가 등) 및 서비스 사용자들의 사용에 따른 효과 등은 교육청의 관련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면, 개인정보처리자는 MS라고 할 것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4	미인가 교육시설 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	<p>□ 협동조합으로 등록하여 교육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으며, 유치원~고등학교 연령의 학생들을 모집하여 입학하려는 학생들을 조합원으로 가입시킨 후 수업료 등을 징수하고 시설을 운영하는 행위가 협동조합 기본법 제45조에 근거한 사업이라도 학령기(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미인가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실에 근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위반 내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위반, 제22조 1항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 위반 및 제65조 2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p> <p>□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위반 내지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위반, 제22조 1항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4조 위반 및 제65조 2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 어느 법률이 더 적합한지 여부</p>	<p>□ 「협동조합 기본법」이 아니라도, 각 법률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이 가능</p> <p>□ 「초.중등교육법」,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각 해당한다면, 모두를 처분사유로 하여 행정처분하는 것을 권하며, 수사기관에 위반 사실을 고발하는 조치도 병행함이 좋겠음.</p> <p>□ 「협동조합 기본법」이 아니라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의 적용이 가능</p> <p>□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 및 「초.중등교육법」 제67조 2항 제1호, 제4조 적용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바, 추가적인 검토 필요. 만약 위와 같은 법령의 적용이 어렵다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위반도 검토해 볼 수 있음.</p> <p>□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조합이라 하여도 교육감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운영하였으므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1항 위반 적용 가능</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5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및 제3항 위반 관련	<input type="checkbox"/>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직무 관련', '상급 공직자', '제공하는 금품등의 재원'의 해석에 관한 내용 - 교직원간 상품권 제공 시 직무 관련, 상급 공직자 인정 여부 등	<input type="checkbox"/> 행정계장이 당직전담실무원에게 십만원권 상품권 2매를 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준 것이 아니고, 사실상 상급 공직자인 행정계장이 당직전담실무원에게 위로와 격려 차원으로 준 것이며 그 재원이 사비라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행정계장이 당직전담실무원에게 십만원권 상품권 2매를 준 것은 직무와 관련하여 준 것이 아니고, 사실상 상급 공직자인 행정계장이 당직전담실무원에게 위로와 격려 차원으로 준 것이라면, 그 재원이 사비라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이 타당함. <input type="checkbox"/> 행정계장으로 인해 당직전담실무원이 시건장치를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며, 설령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행정계장이 당직전담실무원과 같은 '교육감소속근로자 인사관리'를 업무로 하고 있다면, 행정계장의 직무상 당직전담실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관계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행정계장이 당직전담실무원의 상급 공직자라고 보임.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6	공 유 재 산 (토 지) 법정도로화에 따른 무상귀속 및 관리 주체에 대한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해당 현황도로를 법정도로화하기 위한 도시계획 시설(도로) 결정 후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도로)은 「국토계획법」 제99조, 제65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인천시(또는 구청))에 무상 귀속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도시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공공시설(법정 도로)이 관리청(인천시(또는 구청))에 무상귀속되지 않을 경우, 우리 교육청이 법정도로 토지의 소유권을 유지한 채 법정도로를 관리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법정도로)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지 않는다고 사료 <input type="checkbox"/> 현황도로가 법정도로가 될 경우, 도로법 제23조에 의하여 이 사건 도로의 관리청은 인천광역시장일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소유권은 교육청이 유지한 채 도로 관리는 인천시에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현황도로를 법정도로화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후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도로)은 「국토계획법」 제99조, 제65조 제1항에 따라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 (인천시(또는 구청))에 무상귀속될 것으로 보임. <input type="checkbox"/> 법정도로는 관리청에 무상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바, 구청이 소유권을 유지한 채 법정도로를 관리할 적법 한 방안은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가 아닌, '기존의 공공시설을 정비하여 계속하여 공공시설로 사용하는 경우'는 이를 관리청에 무상귀속시키는 경우 반대급부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행정청 포함)에게 귀속시킬 재산이 없으므로,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 된다고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 <input type="checkbox"/> 도로관리청은 도로법 제23조1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주체가 된다고 봄이 타당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input type="checkbox"/> 「국토계획법」제99조, 65조에 따라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법정도로)은 그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귀속되어야 하나 현황도로 부지 내 토지는 대부분 교육감 소유 토지임을 감안하여 관리청과의 합의 또는 협약을 통하여 공공시설(법정도로)의 소유권은 교육청이 유지한 채 관리는 관리청(인천시(또는 구청)에서 할 수 있다고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주체는 누가 되든 상관없이 모두 국토계획법 제65조 제1항이 적용되는 행정청에 해당할 것이고, 본 건 도로는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결국 관리청에게 무상귀속되는 공공시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임.</p> <p><input type="checkbox"/>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관리청에게 무상으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귀청은 위 시설에 대한 소유권과 관리권을 모두 상실하는 것으로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국토계획법 제65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음. 동법의 적용이 제외된다고 하면, 학교용지 용도폐지→시행자에게 양도→시행자는 관리청에 기부채납</p> <p><input type="checkbox"/>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지 '교육·학예에 관한 사항'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귀청이 도로를 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임.</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7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법률자문	<p>□ 사립고 1, 2학년 학부모회 임원들이 4만원씩 각출하여 4천원 상당의 수능떡을 수능 전날 학생 355명과 교사 100명에게 제공. 4천원 상당의 수능떡을 제공받은 교사 100명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p>	<p>□ 수능 전날 고3학생들에게 수능떡을 전달하면서 교사 100명에게 수능떡을 전달한 것은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교사 한 명을 특정하여 지급하지 않았고, 학부모회 임원 전체가 각출하여 제공한 것으로 이는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볼 수 없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를 바라고 제공했다고 보기 어려움.</p> <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2호에 해당하는 음식물 가액 범위인 3만원을 넘지 않는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p> <p>□ 수능 전날 고3학생들에게 수능떡을 전달하면서 교사 100명에게 수능떡을 전달한 것은 전체교사를 대상으로 제공한 것으로 교사 한명을 특정하여 지급하지 않았고, 학부모회 임원 전체가 각출하여 제공한 것으로 이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않다는 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2호에 해당하는 음식물 가액 범위인 3만원을 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학생들의 학사일정이 완전히 종료된 경우가 아니므로 학부모회 임원들과 100명의 교사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 <input type="checkbox"/> 떡을 받은 교사 100명이 3학년뿐만 아니라 1,2학년을 담당하는 경우 그러한 교사들과의 관계에서 전달된 수능떡은 자식들의 평가.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전달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라고 보기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사회일반인의 건전한 도의감에 부합되는지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할 것으로 학생들을 위한 떡이고, 교사들에게 단순히 남은 것을 제공한 것인지 등을 살피어 판단해야 함.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 관련해서는 모두 아님.
8	○○초 이전에 따른 학교부지 조성 및 신축사업을 위한 「기본협약서」 관련 법률 자문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기본협약서」의 유효성 여부(갑설: 인천시교육청, 을설: 구청) <input type="checkbox"/> 「기본협약서」 제5조(지원사항) 제3항의 지원기간 등에 대한 해석 요청(갑설: 인천시교육청, 을설: 구청) <input type="checkbox"/> 「기본협약서」 제6조(실시협약)의 대상에 대한 해석 요청(갑설: 인천시교육청, 을설: 구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을설: 추후 실시협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협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본 사업이 종료되는 날까지로 한다고 규정(제9조)되어 있고, ○○초 이전 사업이 완료되었으므로 현재 유효하지 않다고 봄이 타당하며, A구역 초등학교 신설.개교도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바, 본 사업이 종료된 현재까지 기간 범위 내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제하였다고 봄이 합리적인 의사에 부합할 것임.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input type="checkbox"/> 「기본협약서」 제5조(지원사항) 제1항의 준수 여부 및 향후 방안	<input type="checkbox"/> 을설: 실시협약은 본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계획에 해당하는 것으로, 특별히 실시협약에 위임한 경우가 아닌 한, 기본협약서의 내용에 반하거나 저촉되는 사항을 정할 수는 없으므로 지원기간은 종료되었음. <input type="checkbox"/> 구청에게 단순한 협조의무를 명시한 것에 불과하여, 법률적 구속력을 인정하기에는 미흡함. <input type="checkbox"/> 을설: 기본협약서 제5조 제3항에서 A구역 초등학교 신설·개교 시까지 지원사항을 별도의 기간으로 정한 것은 본 협약의 유효기간, 즉 본 사업이 종료되는 기간 내에서만 유효한 기한부 특약으로 해석됨. <input type="checkbox"/> 을설: 본 협약이 체결된 2015.4.21.부터 본 사업이 종료된 2022.8월까지 제5조의 지원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본 사업의 종료로 지원기간은 2022.8월 이전까지가 타당함. <input type="checkbox"/> 을설 본 사업의 종료로 실시협약의 체결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한 지원 기간은 종료되었으며, 본 사업 종료 이후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협의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협약당사자가 아닌 A구역 초등학교 용지 및 건물, B구역 중학교 용지 기부채납 관련 해당 조합의 의견을 명문화하여 기부채납 확약에 대한 협의문서 제출이 필요하나, 본사업이 종료된 현시점에서는 준수 여부가 협약상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함.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 갑설: 기본협약서 제5조 제3항에서 통학차량 지원기간은 A구역 초등학교 신설·개교 시까지로 한다고 정하였고,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보다 늦춰질 수 있음은 협약 체결 당시에도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안이었을 것으로 보이며, 만약 그렇지 않다면 도시개발사업 준공 시보다 늦어지는 경우에는 준공 시까지만 지원한다고 추가 하였어야 하는바, 갑설이 타당함.</p> <p>□ 갑설: 제5조 제3항의 지원사항은 제6조의 예시로 나열되어 있지 않고, 제5조에서도 실시협약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실시협약에서 제5조 제3항에 대한 내용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p> <p>□ 구청의 권한 내에 있는 사항이라면 구청에 대하여 제5조 제1항의 이행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청과 무관한 사항이라면, 구청이 원시적으로 이행 불능인 사항을 계약 내용을 한 것인바, 부분적 무효에 해당함.</p>
9	하도급업체 공사대금 지급 방법	□ 현재 원도급이 하도급에게 지급할 금액은 1억 3천만원 예상되며, 공동수급체인 B에 하도급 공사업체 대금 지급 처리 동의서를 받은 후에 하도급대가의 직접 지급을 중지하고, 하도급 공사업체 대금을 원도급이 직접지급으로 변경을	□ 발주처인 교육청으로서는, 대표 공동도급사인 A의 하도급업체에 대하여 법률상 직접 지급의무가 있는 제3채무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또한 위 A에게 발주처로서 지급하여야 할 공동도급 지분 금액 범위 내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채권에 관련된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교육청에 제출 후에, A가 C 채권금액 2,127,005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해제하고, 제3채무자 A가 채권금액 49,359,875원을 원도급이 직접 공탁하고 나머지 차액은 하도급업체의 자재장비 업체에게 합의서를 받고 자재 장비 대금을 직접 지급 가능 여부</p>	<p>공사 대금 전액(A가 주장하는 채무 금액에 한정되지 아니함)을 공탁하고, 위 공탁금에서 A를 포함한 관련 채권자들이 자신의 정당한 채권액을 주장, 입증하여 수령해 가도록 하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으로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발주자의 입장에서는 직불사유 발생 후라면 그 후에 있는 압류 및 추심명령과는 관계없이 (또한 위 D가 2024. 2. 27. 받은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는 발주자가 아님) 하수급업체에 직불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임. 다만, 하도급대금의 금액이 미확정된 상태에서는 직불을 유보하더라도 관련 법령 위반이라고 보지 않음 (하도급법 시행령 제9조 제4항 등).</p> <p><input type="checkbox"/> 사건의 각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피압류채권이 다르므로 귀청이나 A 어느 한 곳에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각자 그 범위 내에서 공탁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귀청이 자재 장비 대금 등을 직접 지급하려는 업체들 또한 하도급업체의 채권자이므로 임의로 지급하시면 추심금 지급 등의 소송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어 보임.</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10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및 형법 제307조 관련	<input type="checkbox"/>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3조(공공기관 물품 등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에 따른 '공공기관이 소유한 물품, 시설 등의 사적 사용'의 해석 관련한 경고 공문 발송 시 「형법」 제307조에 따른 명예 훼손 해당 여부	<input type="checkbox"/>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위반 소지가 없고, 명예훼손의 소지 또한 없음. <input type="checkbox"/>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위반 소지가 있고, 명예훼손의 소지 또한 있음. <input type="checkbox"/> 이해충돌방지법 제13조 위반의 소지 없고, 명예훼손의 소지 또한 없음.
11	공유재산 관리비 지급 의무에 대한 법률 자문	<input type="checkbox"/> 인천시교육청이 인천도시공사에게 관리비 지급 의무가 있는지(지급 의무가 있다면 그 범위는)	<input type="checkbox"/> 민법 제265조, 제266조 제1항에 따라 귀 기관은 공유물 관리에 소요된 비용을 인천도시공사에 지급할 의무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귀 기관은 지방자치단체로 귀 기관에 대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교육감과 인천도시공사가 공유하고 있는 토지 19필지는 인천도시공사(지분 75.02%)가 과반수 지분권자로서 그 관리 방법을 결정하여 관리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소멸시효와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의 귀청에 대한 관리비 청구권은 지방재정법 제53조가 적용되어 그 소멸시효는 '5년'이라고 사료 <input type="checkbox"/> 교육청은 공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총관리비 중 교육청 지분인 24.98%에 대한 금액인 19,882,731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음. <input type="checkbox"/> 토지 관리 권한은 '대부 및 매각에 대한 사무처리 위임협약'에 근거한 것으로, 채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일반조항인 민법 제162조 제1항이 적용되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음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input type="checkbox"/> 관리비 부담에 대한 협약체결이 없는 기간의 관리비 상당에 대하여 귀청이 인천도시공사에 관리비 지급할 의무가 전혀 없다고 단정하기는 쉽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 <input type="checkbox"/> 인천도시공사에 관리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귀청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므로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른 채권소멸시효를 적용 <input type="checkbox"/> 인천시교육감(지분 24.98%)과 인천도시공사(지분 75.02%)가 토지를 공유하고 있으므로, 협약체결이 없었다 하더라도 공유자는 그지분의 비율로 공유물의 관리비용을 부담 <input type="checkbox"/>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권리는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됨
12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사무처리 관련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 관련 행정심판 청구 사건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징구한 청구 당사자의 개인정보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아 사용 가능 여부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 시행 문서를 위원회 소관부서인 노사협력과 전자문서에 붙임 형식으로 전자 시행 시 절차상 하자 여부 (행정심판 당사자(학생) 소속 학교로 전자공문 시행하여, 소속 학교에서 당사자(학생)에게 붙임문서(행정심판위원회 공문) 송달)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3항 및 행정심판법 제20조는 행정심판위원회로 하여금 학교폭력 관련 가해학생 측의 행정심판 청구가 있는 경우, 피해학생 측에 행정심판 청구 사실 통지 및 심판참가에 관한 사항을 문서로 안내하도록 의무지우고 있고, 이는 피해학생 측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을 위한 것인바, 피해학생 측의 별도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 절차는 불필요하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는 독립한 합의제행정기관이므로 행정심판위원회 명의의 송달 문서의 최종 결재권자를 '인천광역시교육감'(전자문서 시행 시)으로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비록 붙임파일 형식으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공문을 첨부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령상 권한 없는 자의 명의로 행해지는 행정행위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사료됨.</p> <p>□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1항 제2호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규정하고, 질의 사항은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3항에 따른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정보주체(피해학생 측)의 별도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 사용가능한 것으로 사료됨.</p> <p>□ 전자공문 첨부파일 상 통지·안내의 주체가 인천광역시 교육청행정심판위원회가 될 것이므로 절차상 하자가 없어 보임. 다만, 추후 당사자가 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으로 다투는 경우 피고 선택에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그 내용으로 보아 피고가 행정심판위원회가 됨이 타당한 경우, 해당 지침 등을 설명하고 필요시 피고 경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p> <p>□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절차 이행을 위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시 제공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 사용하는 것이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나</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명문상 규정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단순한 안내까지 개인정보 사용에 반드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고 해석할 근거 미약해 보임.</p> <p><input type="checkbox"/> '24 기록물관리지침(행정규칙) 및 같은 지침 FAQ에 따르면 별도 부서로서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위원회의 경우, 해당 위원회 소관부서를 통해 전자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하고 있는바 절차상 무리한 견해가 있지 않다고 보이며, 절차상 하자라는 것이 단순히 행정청 내부적으로 적용되는 행정규칙에 저촉되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의 점이 있어야 하는데 이 사안의 경우 을설의 견해에 따르더라도 절차에 관한 법령 위반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임.</p>
13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수당에 대한 과세 및 과세율 판단 여부	<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수당에 대해 어느 소득으로 분류하고 과세해야 하는지와 과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p><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수당은 기타소득에 포함되고, 관련 규정에 따른 비과세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 과세 대상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본 건 수당이 과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세무 당국에서 결정할 것이므로, 자세한 부분은 세무 당국과의 협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p> <p><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교육청과의 고용관계 없이 위촉되어,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사안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받고</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있음.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역할을 감안하면, 그 수당은 비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소득'이며, 기타소득에 따른 세율이 부과될 것임. 기존의 다른 기타수당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p> <p><input type="checkbox"/>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수당은 그 업무의 특성상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해당하는 '고용관계 없이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수당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할 때, 이와 같은 수당은 소득세법 제12조 제5호 각호에 해당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비과세소득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 받는 수당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경우 70%를 최소 경비로 인정하고 있음(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1의2목).</p>
14	형법 제287조 관련	<p><input type="checkbox"/> 운동부지도자 A가 학생선수 B에게 수고비를 준다며 온라인 중고물품판매 플랫폼에 A의 중고물품을 팔라고 지시(A는 B가 먼저 제안하였다고 주장함)하고 B의 계좌로 판매대금을 받은 후 A의 계좌로 받은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에 해당하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미성년자 약취 유인으로까지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으나 입법 취지와 행위의 목적 및 의도 등을 고려할 때 미성년자 약취 유인으로 볼 여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님.</p> <p><input type="checkbox"/> 미성년자 약취 유인은 미성년자를 데려간 행위인데 이 사건에서는 데려간 행위라고 볼 수 없음.</p> <p><input type="checkbox"/> 미성년자 약취 유인은 미성년자를 데려간 행위인데 이 사건에서는 데려간 행위라고 볼 수 없음.</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15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해석 요청	<p>□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추석, 설 등 명절에 운동부 학부모들을 대표하여 운동부 학부모회 대표에게 사과 1박스를 선물로 받았다면, 사과 1박스를 선물로 받은 운동부 지도자와 선물을 제공한 학부모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p>	<p>□ 운동부 지도자와 운동부 학부모와의 직무관련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B개인이 준비한 선물이 아니라 00고등학교 농구부 학부모 모두가 준비한 선물에 해당하여, 선물을 제공한 B와 A사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또한 A는 선물 수수 여부로 인해 선발 선수 명단을 임의로 바꾸는 일이 없었고, 고등학교 3학년 위주로 선발 선수 명단을 구성하여 A의 선물 수수 여부가 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2호에 해당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겠음.</p> <p>□ 운동부 지도자는 학생 선수들의 경기 출전, 선발 선수 명단 구성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운동부 학부모와의 직무관련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① 운동부 학부모 모두가 준비한 선물에 해당함에 따라 선물을 제공한 자와 운동부 지도자 사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등과 그 밖의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의 경우에는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③ 운동부 학부모회 대표가 운동부 학부모들을 대표하여 사과 1박스를 제공하게 된 경우 등을 고려할 때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에 해당하지 않다고 단정하기 쉽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고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운동부지도자는 운동부 소속 학생들의 경기출전, 선수 명단 구성 등의 권한을 가지고 평가·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학생들의 학부모와 운동부지도자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임.</p> <p><input type="checkbox"/> 국민권익위원회는 유사한 관계인 교사와 학부모의 관계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음료수 1캔도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고 있음. 따라서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운동부지도자가 학부모들로부터 받은 사과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함.</p>
16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 여부	<p><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2023. 11. 10. 학부모와의 회식 후 대리운전 비용을 학부모가 대신하여 지불했는데, 운동부 지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던 중 운동부 지도자가 대리운전 비용을 대납받았다는 민원이 접수됨에 따라 2024. 4. 8.</p>	<p><input type="checkbox"/> 운동부 지도자와 학부모와의 직무관련성은 인정된다 하더라도, 운동부 지도자가 학부모로부터 대리운전 비용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또한 운동부 지도자는 인지하지 못한 금품 수수 여부가 운동부 학생들을 지도·관리하여 대회 출전하는데 있어</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감사관실에서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운동부 지도자가 대리운전 비용의 대납 사실을 알게 되었고 같은 날 대리운전 비용을 납부한 학부모에게 돌려주었다면 위와 같이 운동부 지도자의 대리운전 비용을 대납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p>	<p>공정한 직무수행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없어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p> <p>□ 운동부 지도자는 학생 선수들의 경기 출전, 선발, 선수 명단 구성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자로 운동부 학부모와의 직무관련성은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운동부 회식 후 학부모와 운동부 지도자가 동시에 대리 기사를 호출하여 본인이 부른 대리 기사로 착각하여 이용한 점, 감사 조사 과정 중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25,000원을 반환한 점,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 여부에 관한 제한 없이 금품 등의 수수 행위 전반을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 인하여 공직자 등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처벌 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는 점 등, 위 행위와 관련하여 운동부 지도자가 학부모로부터 대리운전 비용을 제공받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었고 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지한 후 바로 학부모에게 반환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반으로 보기 힘들다고 사료됨.</p> <p>□ 「부정청탁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은 “공직자 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 등을 받거나</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은 공직자 등은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그 제공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받은 경우 서면으로 신고하고,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거나 반환하도록 하거나 그 거부의 의사를 밝히거나 밝히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운동부 지도자는 운동부 소속 학생들의 경기출전, 선수 명단의 구성 등의 권한을 가지고 평가 . 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운동부지도자와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임. 다만, 대리운전 비용 대납 사실을 알지 못한 것이 인정된다면, 운동부지도자로서는 그 대납 비용을 제공받는 것을 거절할 기회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운동부 지도자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임.</p>
17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중 유관기관의 범위	<p>□ 「지방교육행정기관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제3조(업무추진비의 집행) [별표]지방교육행정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활동 범위 내용 중 3. 업무추진 유관기관 협조, 가. 다른 지방교육행정기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의 공공기관 및 단체(이하 “유관기관”이라 한다)와의 업무 협조를 위한 기념품 지급이라고 되어 있음. 앞선</p>	<p>□ ‘동문화·향우회, 언론기관, 언론협회 등’은 기관에 다양한 업무협조 및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로 볼 수 있어 위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관기관에 해당됨.</p> <p>□ ‘동문화·향우회, 언론기관, 언론협회 등’이 공익활동을 하는 측면이 있어 사익만을 목적으로 활동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기관 업무를 추진하는데 다양한 업무협조를 하는바 위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관기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는 쉽지 않음.</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규칙에서 정의한 유관기관에 '동문회·향우회, 언론기관, 언론협회 등'이 포함되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동문회·향우회, 언론기관, 언론협회 등'과 기관이 특별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공식적인 업무 회의 등을 하는 관계가 아닌 단순한 단체라면 위 규칙에서 정의하고 있는 유관기관에 포함되기 어려우며, 유관기관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행사에 지출하는 업무추진비만 집행이 가능함.</p>
18	<p>재 개발정비사업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 관련 법률 자문 요청</p>	<p><input type="checkbox"/> ○○구역재개발정비사업에 따른 유발학생 배치를 위한 학교신설 필요</p> <p>- ○○구역 내 학교용지 확보를 위하여 ○○구역 재개발정비사업조합과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하고자 함</p> <p><input type="checkbox"/> 기부채납 협약서(초안)의 위법성이나 불공정 여부 판단</p> <p>-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면제와 관련하여 교육청의 관련 의무 및 협조 사항 명시 여부</p> <p>- 위약에 대한 벌칙 조항 등</p>	<p><input type="checkbox"/> 위약벌에 대한 사항은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한 법령 등 규정이 없는 이상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함이 타당함. 다만, 상대방이 기부채납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무형의 손해를 볼 것이 예상되는 경우라면 위약벌에 관한 내용을 포함할 것을 권장함.</p> <p><input type="checkbox"/> 학교용지부담금 관련 협조사항 조항 역시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정함이 타당함. 상대방은 기부채납을 이행하였음에도 학교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 위와 같은 내용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음. 이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협조라는 문언이 다소 추상적이어서 문언에 대한 재검토는 필요함.</p> <p><input type="checkbox"/> 갑설이 타당하며 협약서(초안)에 특별히 위법하거나 불공정하다고 보이는 부분 없음.</p> <p><input type="checkbox"/> 협약의 당사자로서 위약에 대한 제재나 벌칙 등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합의에 의하여 사후 다툼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정하여도 무방함</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및 면제 등의 처분청은 시·도지사이므로, 아무런 처분 권한이 없는 교육감으로서 학교용지부담금의 부과 및 면제 등과 관련한 의무의 설정이나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기부채납 협약서에 명시할 필요 없음.</p> <p>□ 위약에 대한 보상 및 벌칙 - 제8조: 조합이 요청할 수 있는 사항, 조합의 필요 조치 의무, 조합의 민원, 손해배상 등의 책임, 성실수행 의무 등만을 규정하고 있어, 어느 일방의 실제 위약에 관한 보상이나, 벌칙에 관한 내용은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음.</p> <p>□ 관련 의무 및 협조 사항이라는 점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아도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분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 이행 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및 면제의 주체는 시·도지사로서 관련 의무 및 협조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p>
19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법률 자문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서 공직자 등에 해당하는 고등학교 운동부 지도자가 학교 공식 행사(일본학교와의 교류전)를 진행하면서, 운동부 학부모 대표의 요청에 의하여 구입한 간식 및 행사진행 관련 물품 등을 개인카드 및 현금으로 사용한 후 사용 금액 76만 원 중 일부인	□ 운동부 지도자가 받은 50만 원은 학교의 공식 행사인 '일본학교와의 교류전 행사'를 진행하면서 농구부 학부모 대표가 운동부 지도자에게 학생들과 함께 있는 동안 학생 및 스텝 등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행사기간동안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 및 스텝 등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후 구입한 물품에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50만 원을 운동부 학부모 대표로부터 돌려받은 경우 운동부 지도자와 현금을 제공한 학부모의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p>	<p>대한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것이라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음.</p> <p>□ 운동부 지도자가 받은 50만원은 학교의 공식 행사를 진행하면서 농구부 학부모 대표가 운동부 지도자에게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사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행사기간 동안 운동부 지도자가 학생 및 스태프 등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입한 후 구입한 물품에 대한 일부 금액을 돌려받은 것인 점,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 여부에 관한 제한 없이 금품 등의 수수행위 전반을 포괄적으로 금지함으로 인하여 공직자 등의 직무와 무관한 사적 영역의 일상적 사회생활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공직자 등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등 처벌범위가 광범위하게 확대될 위험이 있는 점, 운동부 학부모 대표가 전달한 돈은 학생들에게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기 위해 운동부 학부모들이 각출한 돈을 운동부 학부모를 대표하여 운동부 지도자에게 전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운동부 학부모 대표와 운동부 지도자 사이에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다고 단정하기 쉽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고 사료됨.</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동부 지도자 甲은 운동부 소속 학생들의 경기출전, 선수 명단의 구성 등의 권한을 가지고 평가·지도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그 학부모들과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임. □ 이러한 관계인 甲과 乙은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의 수수가 금지되므로, 乙은 학생들에게 간식을 사달라는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甲에게 금품을 지급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 乙은 간식 등을 직접 학생들에게 전달했어야 할 것으로 보이고, 甲이 자신이 사용한 간식비를 보전할 목적으로 乙로부터 돈을 지급받았다면 甲과 乙은 각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항 및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것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 사료됨.
20	A구역 학교시설 기부채납 관련 법률자문	□ A구역 B로트(1,500세대)주택건설사업은 사업시행자가 C로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A구역 내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한다는 조건하에 사업이 승인되었으나, C로트 사업시행자와 구체적인 협의없이 학교시설 기부채납 조건을 제시하여 B로트 사업시행 허가를 받은 B로트 사업시행자의 행정절차적, 법적 책임 유무 여부	□ A구역 B로트(1,500세대)주택건설사업은 사업시행자가 C로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한다는 조건 하에 '이행'을 조건으로 승인된 이상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인 이행자료(확약서 등)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 이행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공사 중지' 등 행정적,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 A구역 B로트(1,500세대)주택건설사업은 사업시행자가 C로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한다는 조건 하에 승인된 점, 주택건설사업(변경승인), 입주자 모집공고 시에도 조치계획 이행을 조건으로 '적합'으로 승인한 점 등을 고려하여 학교시설 기부채납에 대한 구체적인 확약근거를 제시해야 함. 이행근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절차적, 법적 책임이 있으며, '공사중지' 등 B로트 사업시행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함.</p> <p>□ A구역 B로트(1,500세대)주택건설사업은 사업시행자가 C로트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학교시설을 기부채납한다는 조건 하에 승인되었으므로, B로트 사업시행자는 사업 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 B로트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승인 '조건'에 해당하는 사항을 여전히 이행할 수 있는 상황인지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이행을 담보하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해야 함.</p>
21	사립 대안학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 관련 사무처리 지원 권한 존재 여부	□ 인천광역시교육청 내 사립 대안학교 재정결함보조금에 대한 학교생활교육과의 지원 권한 존재 여부에 대한 문의	□ 사립 대안학교가 점진적으로 교부금 산정 대상에 포함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위 학교가 처음으로 교부금 산정기준에 포함된 구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가, '대안학교 등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안학교의 교원 인건비, 학교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운영비 등 비용, 과밀학급 해소'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립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다른 사립학교 또는 국공립 대안학교와 같이 앞으로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이처럼 사립 대안학교가 사립학교 개념에 포섭되므로, 과거 업무처리 방식에 근거한 을설을 따를 것이 아니라, 갑설과 같이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에 따라 사립학교 지원 업무를 총괄하는 교육행정국에서 사립 대안학교 지원 업무까지 담당하면 되는 것으로 판단됨.</p> <p>□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7조 7호 사립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 5호 자금의 운용,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사무를 담당하는 국은 '교육행정국'으로 보임. 그렇다면 '사립 대안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예산 범위 내 자금 운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의 지급에 관한 사무는 '교육행정국'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해 보임. 만약 대안교육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따로 업무분장을 한 것이 있다면,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p> <p>□ 기존에는 사립 대안학교에 관한 사항을 학교교육국에서 수립하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하여 업무를 진행한 것으로도 추측되나, 이것이 인천광역시교육감이</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따로 정한 사항이 아니라면,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6조의2에서 정한 업무분장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됨. 개정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별표 1]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를 기초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서 정한 업무분장을 살펴보면, 사립 대안학교의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이 아니라 교육행정국의 업무라고 판단됨.</p>
22	<p>마을 방 과 후 학 교 프로그램 운영기관 행정서류 미제출 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모사업(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선정되어 운영지원금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청에서 운영점검 시 제출 요청한 행정서류(운영지원금 통장사본 포함)를 제출기한까지 제출 완료하지 않았을 때 교육청에서 취해야 하는 조치 □ 제출 요청한 행정서류 확인 결과, 부적정하게 집행한 내용이 확인되었을 때, 교육청에서 취해야 하는 조치는 □ 운영기관이 지원금을 사업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이 확인되어 교육청에서 업무협약을 해지하고, 지원금 회수를 진행할 때 운영기관에서 회수처리에 응하지 않는다면 교육청에서 취해야 하는 조치는 □ 해당 사업 공모계획에 재료비 수익자 부담(월 1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 요청한 행정서류(운영지원금 통장사본 포함)를 제출기한까지 제출완료하지 않으면 업무협약서 제7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8조(협약의 해지)에 의거 협약을 해지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여야 할 것임. □ 협약을 해지가능함. □ 횡령으로 고소하거나 민사소송으로 반환청구 가능함. □ 수익자부담금의 귀속 주체가 기관이라면 교육청에서 환불 등에 대한 처리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현재의 업무협약서로도 교육청의 위와 같은 조치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별도로 법률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 보내주신 관련 자료들을 보면, 질의하신 사안의 이 사건 협약 및 계약은 귀청이 지역기관 A에게 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 등을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이내)이 가능하여 기관에서 수익자 부담으로 재료를 참여 학생에게 징수하였는데, 수익자부담금을 부적정하게 운영하였을 때 수익자부담금에 대해 교육청에서 환불 등에 대한 처리를 요구할 수 있는지</p> <p>□ 추후 공모사업 진행 시 위와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법률적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p>	<p>내용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인 귀청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 A와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한 사법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보임. '업무협약서' 제4조 제3항에는 "지역기관은 사업비 지급 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명서류를 구비하여 관리한다."는 A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및 제10조에는 교육감의 감독 책임을 규정하면서 제1항에 "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귀청은 A가 제출기한까지 요청한 서류 제출을 완료하지 않았을 경우, 제출기한을 연장해서 다시 한번 제출기회를 주거나,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자체를 협약의 해지 사유가 된다고 판단되시면 협약을 해지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p> <p>□ 향후 제출된 행정서류를 확인한 결과 부적정하게 집행한 내용이 확인되었다면 위 1.항과 마찬가지로 협약 위반 여부 등을 판단하시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으로 인정되고, 나아가 A가 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시면 협약의 해지 등도 가능하실 것으로 보이고, 횡령, 배임 등의 범죄가 성립되는지 여부 등도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임.</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 A가 귀청의 회수처리 요청에 임의적으로 응하지 않는다면, 협약서의 내용에 따른 잔액반환청구를 소송의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임.</p> <p>□ 협약서 자체에는 수익자부담금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없음. 다만, 공모사업 공고문 제6쪽 '마을방과후학교 운영 예산 편성 및 집행' 기준에 재료비 부분에 "④ 프로그램 참여자 본인부담금(재료비)는 월 10,000원 이내 가능"이라고 되어 있음. 앞서 질의사항 1.에서 말씀드렸던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 제10조에는 "①교육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음. ② 교육감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음. ③교육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감의 포괄적인 지휘.감독 권한이 있으므로, 공고문에 제시된 기준에 맞춘 예산안이 A의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있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시면 질의하신 내용으로 처리 요구하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임.</p> <p>□ 행정청의 특성상 질의하신 공모사업 외에도 이미 많은</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민간위탁 형식의 사업진행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보임. 기존의 유사한 형식의 사업들이 존재하는지 타시도나 다른 부서들을 확인해보시고 그러한 사안의 분쟁 발생 시 구체적인 행정처리는 어떻게 하셨는지, 민간위탁 사업의 수탁기관의 감독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을 찾아보실 필요가 있어 보임. 또한 이 사안의 협약서는 기존의 다른 민간위탁 협약서들을 참고하시어, 사업자의 의무에 공고문의 내용을 직접 포함하여 명시하거나 교육감의 자료요청시 제출할 의무를 직접 명시하는 등 그 내용을 보완하는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유의미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질의하신 내용 중 특히 가나 항은 결국 구체적인 행정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하시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행정청 내용에서 먼저 정하셔야 할 사항이지 법률자문으로서는 다소 부적합한 것으로 사료됨. 향후 질의하실 때는 구체적인 행정처리는 내부에서 먼저 정하신 후, 관련 법령이나 계약서 등에 비추어 그러한 행정처리가 위법한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신다면 법률자문이 사안을 해결하시는데 보다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p>
23	행정조사에서 취득한 자료를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영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열람목적으로 받았지만 사실상 반환 및 폐기하지 않고 보유하던 자료 <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이 제보한 학원에 내린 행정처분(벌점, 과태료)의 상세내역	<input type="checkbox"/> 미제공 및 즉시 파기 <input type="checkbox"/> 제공해야 함 <input type="checkbox"/> 협조의무 없음 <input type="checkbox"/> 제공의무 없음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input type="checkbox"/> 협조의무 없음 <input type="checkbox"/> 제공의무 없음 <input type="checkbox"/> 협조의무 없음 <input type="checkbox"/> 제공의무 없음
24	마을 방 과 후 학 교 프로그램 운영기관 행정서류 미제출 건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모사업(마을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에 선정되어 운영지원금을 받은 기관 대표가 채무자로서 부동산가압류가 되었다면 대표가 운영하는 단체의 법인 통장도 가압류가 되는지 <input type="checkbox"/> 공모사업을 운영하는 기간 중에 협약에 의해 별도의 계정을 개설하여 사업비를 지급받은 기관 통장이 가압류가 되었다면 교육청에서 환수를 위해 취해야하는 조치 <input type="checkbox"/> 교육청에서 운영기관 대상 민사소송으로 반환 청구를 진행한다면 운영기관 대표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기관 대표에게 다른 채권자가 부동산가압류를 진행하는 중이라면 변제의 우선 순위는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input type="checkbox"/> 운영기관에서 지급받은 사업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교육청에서 취해야하는 조치 <input type="checkbox"/> 기관통장(해당 사업으로만 별도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 사용내역을 교육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input type="checkbox"/>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관하여 장래 그 집행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채무자가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로, 가압류는 신청할 때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의 표시',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 '목적물의 표시여부' 등을 하여야 함. 그런데 공모사업에 선정된 A의 법인은 민사관계에서 甲과는 별개의 인격이 인정되므로 甲의 채권자가 반드시 A의 법인의 채권자인 것은 아니라 할 것이며, 더하여 부동산과 예금채권은 그 목적물 또한 다르다 할 것이므로 甲명의로의 부동산에 甲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한 것과 A 법인 명의로의 예금 채권에 A의 채권자가 가압류를 하는 것은 다른 채권자의 다른 재산을 목적으로 가압류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따라서 甲 명의로의 부동산에 가압류를 하더라도 법인인 A의 통장까지 반드시 가압류가 되는 것은 아님. <input type="checkbox"/> 만약, 질의하신 사안과 별개로 A법인의 채권자가 A법인의 예금채권에 가압류를 하셨다면, 교육청 역시 사업비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채권자로서 예금채권에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가압류 등의 보전소송을 함께 진행하는 방법을 고려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자료를 살피다 보니 협약서에 기명날인한 인장이 A법인의 것이 아니라 甲개인 명의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음. 위 질의 사항은 A가 법인격이 있는 법인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바, A가 법인격이 없는 다른 성질의 단체라면 귀청은 A가 아니고 甲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할 수도 있고, 그러한 경우라면 甲의 채권자가 甲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예금채권까지 가압류를 신청하여 이 사안의 예금채권도 가압류가 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임. A가 진짜 법인 등기가 되어있는 법인인지 확인하시고, 향후 이러한 협약서에 기명날인 하는 경우 그 협약의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날인하는 인장이 법인 명의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p> <p>□ 귀청이 협약을 체결한 A가 법인인 경우 귀청의 소송 상대방은 甲이 아니라 A임. 따라서 A에 대한 금전채권으로 甲의 부동산을 가압류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방지하는 제도이므로 압류절차로 진행이 되어야 채권자들에게 배당이 이루어 지므로 일반적인 금전채권자들 사이에는 우선순위가 없고,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짐.</p> <p>□ 이 질의사항은 귀청의 2023. 1. 3. 초등교육과-174 질의사항 나.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임. 사업비 목적 외</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사용 등으로 인하여 A가 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시면 협약의 해지 등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횡령, 배임이 성립하지 않는지 여부도 판단해 보실 수 있을 것으로 보임.</p> <p><input type="checkbox"/> 이 사안 협약의 성질이 사법상 계약의 성질이 인정된다면, 소송을 통해 법원의 명령이나 고소·고발을 통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는 한 귀청에서 A기관이 협조 없이 임의로 A기관의 통장내역을 조회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임.</p> <p><input type="checkbox"/> 이론상 가능하나 통장 가압류는 법원에 현금을 공탁하는 경우가 있어 애로가 있을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교육청이 기관 상대로 소송하여 집행권원(승소판결)을 득한 후 통장 가압류를 본압류로 바꾸어 통장에 가압류되어 있는 돈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거쳐 돈을 회수할 수 있음.</p> <p><input type="checkbox"/> 만약 대표가 연대보증을 했다면 연대보증책임을 구하는 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또는 대표를 형사고소하여 유죄 판결이 날 경우 대표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것임.</p> <p><input type="checkbox"/> 가압류는 순위가 동일</p> <p><input type="checkbox"/> 대표를 횡령죄로 고소 가능</p> <p><input type="checkbox"/> 민사소송제기 후 법원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신청하는 경우에만 사용내역 확인 가능하고, 가압류 단계에서는 확인 불가함.</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ata-bbox="1249 308 2089 715">□ 귀청에서 보내주신 업무협약서에는 운영지원금 사용내역을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보임. 업무협약서 제5조 제1항은 '지역기관은 본 사업을 종료한 후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운영 결과 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관에서 교육청이 요청한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만약 귀청에서 해당기관이 계속하여 행정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업무협약서 제7조 및 제8조를 근거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어 보임. <li data-bbox="1249 722 2089 850">□ 행정서류 확인결과 사업비의 목적 외 사용 등 부적정한 집행내용이 있으면, 귀청에서는 업무협약서 제8조 제2항 가목을 근거로 협약을 해지할 수 있어 보임. <li data-bbox="1249 858 2089 986">□ 운영기관이 회수처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귀청에서는 해당 운영기관을 상대로 보조금(사업비)반환청구의 소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li data-bbox="1249 994 2089 1121">□ 수익자부담금의 부적정 사용을 이유로 귀청에서 해당 운영기관에 환불 등의 처리를 요구할 수 없다고 사료됨. 수익자부담금에 대한 업무협약 조항이 없기 때문임. <li data-bbox="1249 1129 2089 1361">□ 해당 운영기관 대표자가 채무자로서 부동산가압류가 되었더라도, 대표자가 운영하는 단체의 법인 통장이 가압류 되지는 않음. 법인의 별개의 인격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법인 명의로 채무가 있어야 법인통장에 가압류를 할 수 있음.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를 받은 기관통장이 가압류된 경우, 귀청에서는 업무협약 해지를 이유로 사업비 환수청구의 소를 제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판결(집행권원)을 받아야지만 집행을 할 수 있기 때문임. 귀청에서 판결을 받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기관통장에서 돈을 추심한다면, 귀청이 사업비를 환수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음. □ 운영기관(법인)과 그 대표자는 별개의 인격으로 보기 때문에, 법인과 명의가 다른 자(대표자)의 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없음. □ 귀청은 기관 대표가 아니라 기관(법인)과 계약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협약 해지에 따른 사업비 반환청구는 지역기관에 해야 함. 그리고 지역기관을 피고로 한 판결문(집행권원)을 가지고 대표자 명의의 부동산을 강제집행할 수 없음. 변제의 우선순위를 따질 수 없는 상황으로 보임. □ 업무협약서 제8조 제2항 가호를 근거로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비 반환을 위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어 보임. □ 지역기관이 자발적으로 통장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제기 후 법원을 통하여 금융거래 정보를 제출받을 수 있어 보임. □ 업무협약서에 ① 사업비 정산 내역서를 3개월마다 제출해야 한다는 문구, ② 사업비 정산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 등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25	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자문 요청	<input type="checkbox"/>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문서가 도달된후 공사계약이 해지되어 타절검사가 이루어진다면 - 공신탄절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가 가능한지 - 상계처리가 불가능한지	<input type="checkbox"/> 압류의 효력이 생긴후에 발생한 부일여중의 공신탄절금 채권과 도급업체의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이 동시이행 관계에 있지만, 도급업체의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에는 항변권이 붙어 있기 때문에 발주기관은 공신탄절금 채권으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과 상계할 수 없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항변권(동시이행관계 포함)이 붙어 있는 채권은 상계 처리가 불가함. 현재 공사대금에 대하여 압류문서가 송달된 상황이므로, 통상적인 압류사건과 동일하게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임. <input type="checkbox"/> 발주기관과 원도급업체 사이에 작성된 계약서상에 하자보수보증금을 현금으로만 수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경우가 아니라, 보증서나 보증보험증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면, 발주기관이 위와 같은 항변권이 붙어 있는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할 수 없다고 사료됨.
26	하도급대금 지급 관련 법률 자문요청	<input type="checkbox"/> 갑설: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에서 수급사업자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하고 공사가 진행 중 원사업자를 채무자로, 발주기관을 제3채무자로 하는 가압류가 도달 후 계약해지 및 타절기성검사를 실시하고 산출된 타절기성금중 수급업체 시공분을 지급 요청하였을 때 발주기관에서 수급업체로 직접 지급해야한다.	<input type="checkbox"/> 갑설: 공사의 시행 내지 완료를 전제로 직불 합의를 한 경우라면, 적어도 가압류 효력 발생일 이전에 하도급 공사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직불 합의가 우선하게 되므로, 가압류에도 불구하고 직불 의무가 있음. <input type="checkbox"/> 갑설: 발주기관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직접청구권이 발생한 후에 원사업자에게 생긴 가압류이기 때문에 발주기관은 가압류를 이유로 수급사업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사료됨.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input type="checkbox"/> 을설: 수급사업자 시공분의 지급요청이 가압류보다 늦어 직접 지급할 수 없다.	<input type="checkbox"/> 갑설 또는 을설: 추후 타절기성금이 산정되고 수급업체에서 직불 요청을 하면,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도 있겠으나 공탁을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input type="checkbox"/> 갑설 :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수급인 및 하수급인 간에 합의한 후, 하수급인이 당해 공사의 시공을 완료한 사실이 인정된 다면, 가압류 등이 발주자에게 송달되었다 하더라도 직접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사료됨.
27	학원법령 해석	<input type="checkbox"/> 등록 말소 처분으로 폐원한 학원과 동일한 자리에 등록된 학원이 폐원학원장의 계좌로 교습비를 계속 징수하는 경우 학원법 제9조 제1항 제6호, 제17조 제1항 제1호에 해당(거짓등록)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학원법 제17조 제1항 제12호의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의 의미	<input type="checkbox"/> 동일한 학원으로 볼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input type="checkbox"/> 거짓 등록이 아님 <input type="checkbox"/> 유죄판결 확정된 경우 <input type="checkbox"/> 거짓등록으로 볼 수 없음 <input type="checkbox"/> 판결 확정 이후
28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운영 관련 법률 자문 요청	<input type="checkbox"/> 초등학교 개교(2004년) 전인 1999년 2월 관할구청에 등록·신고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이나 이는「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구 「학교보건법」) 위반으로 절차상 하자 있는 행정행위로 보아 관할구청에 등록 무효, 취소 요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16조(벌칙)에 근거하여 벌칙 또는 벌금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등록 무효, 취소를 요구할 수 없음. 노래연습장의 개업 당시에 해당 지역은 상대보호구역이 아니었으므로, 애초에 구「학교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사료됨. 이후에 초등학교의 설립으로 그 지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으로 설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행위나 시설의 금지는 필연적으로 국민의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면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이미 적법하게 신고되어 운영 중인 노래연습장의 영업까지 금지되는 것으로 보기에 어려울 것임. 또한 2007년 영업양도를 원인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전 시설의 신고 등의 적법성은 역시 양수인에게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p> <p><input type="checkbox"/> 벌칙 또는 벌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음. 해당 노래연습장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위반한 시설로 보이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16조의 벌칙 적용도 어려워 보임.</p> <p><input type="checkbox"/> 등록 무효, 취소를 요구할 수 없으며, 벌칙 또는 벌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음. 신뢰보호의 원칙상 무효,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어 행정상 제재처분을 하기 어렵다고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등록 무효, 취소를 요구할 수 없음. 노래연습장 등록 당시 시행법인 학교보건법 상 금지되는 시설이 아님, 행정기본법 제14조는 법 적용의 기준으로 처분 당시의 법령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이미 완성된 법률관계에 소급적으로 신법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양도가 되었을 뿐 폐업 후 신규 등록이 되지 않았으므로 이에 따라 신법을 적용하여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을 사유로 무효 또는 취소 요구를 하기는 쉽지 아니할 것으로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벌칙 또는 벌금 부과대상이 될 수 없음. 시행 당시의 법령에 따라 제재대상이 아닌 경우 소급하여 제재를 가하는 것은 행정기본법에 위배되는 측면이 없다고</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볼 수 없으며, 폐업 후 신규등록이 아닌 양도만 있었을 경우 기존 양도인에 대한 허가의 위법사유 존재 유무 등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므로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에 근거하여 벌칙 또는 벌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p>
29	전문상담사 채용 취소 관련 법률 자문 요청	<p>□ 채용공고에 명시된 필수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전문상담사의 경우, 통상해고와 권고사직 중 어떤 방식이 적절한 절차인가</p>	<p>□ 통상해고 및 권고사직 모두 적절한 절차: '통상해고'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고, '권고사직'은 합의에 따른 것으로 적법</p> <p>□ 통상해고 및 권고사직 사안이 아닌 임용취소 사안으로 보는 것이 타당</p> <p>□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통상해고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p>
30	일반재산 무단점유 처리 관련 법률 자문 요청	<p>□ 무단점유 전 상태(무허가건물 철거)로 원상복구 명령하였으나, 불이행시 행정대집행 가능 여부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면 점유자가 경제적 능력 없어 건물포기각서, 철거동의서를 제출받아 점유자 동의하에 교육청이 철거를 진행한다면 사전 절차 (계고, 영장통지)를 생략하고 철거(실행) 후 구상권 청구하면 되는지 여부)</p> <p>□ 점유자가 재산권(건물) 포기각서, 철거동의서(협의를 의한 철거) 제출하였다면 우리교육청 소관 토지에 있는 건물로 보아 공유재산 관리 일환으로</p>	<p>□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지만 대부계약 해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철거를 구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철거 가능(경제능력 없고, 점유자 동의하에 사전절차 생략하여 철거 후 점유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음)</p> <p>□ 점유자가 경제적 능력 없음, 무허가 건물 포기각서, 철거동의서 제출시 교육청과 점유자 당사자 합의에 따라 자체 철거 가능 단, 철거 비용 등 무허가 건물 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전부 협의해야 함.</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교육청에서 자체철거 가능 여부(자체 철거시 행정대집행은 아니지만 철거비용은 지원청이 부담 가능한지 점유자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여부)</p>	<p>□ 교육감 명의로 된 공유재산은 원상복구명령 주체가 될 수 있고 불이행시 행정대집행 가능하다(점유자 동의와 관계없이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사전절차(계고, 영장통지) 생략할 수 있음 대집행 비용 징수는 의무지만 상대방이 자력이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와 같이 비용을 징수하는 것이 구체적인 타당성에 현저히 어긋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징수하지 않을 여지는 있음)</p> <p>□ 판례는 행정대집행이 인정되는 경우와 민사적 합의에 의한 철거 방식은 엄격히 구별하고 있고 관련법령에서도 행정청과 상대방이 철거 합의로 사전 절차를 생략하고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어 본 건은 원상복구 명령이 있었으므로 행정대집행 절차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함.</p> <p>□ 일반재산을 대부하는 계약은 사법상 계약이지만 대부계약 해지 후 정당한 이유 없이 점유시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철거를 구하기 어렵고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철거 가능</p> <p>□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의 경우 단순한 정의 규정에 불과하여 동조 제4호가 자체철거의 근거가 되기는 어려움</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원상복구 명령 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실시 할수 있음(점유자가 주택포기각서, 철거동의서 제출할 경우 행정대집행 대상이 되지 않아 대집행 사전절차(계고, 통지)는 거치지 않아도 되지만 철거비용을 강제집행이 어려워 자체철거 후 비용 미징수시 감사지적 가능성) 행정대집행 방법으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든 주택포기각서 및 철거동의서 받고 교육청에서 철거하든 점유자로부터 철거비용을 받기는 어려워 행정대집행법상 절차를 거쳐 행정대집행으로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는 것이 타당</p> <p>□ 무허가건물 소유자가 재산권 포기각서 및 철거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교육청 자체철거 할 수 있음. 단, 교육청이 자체철거할 경우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데 그 근거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근거(안전펜스 등으로 충분히 관리 가능하여 주민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보기 어려움) 부족함. 건물의 철거 규모가 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자체 철거보다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타당</p> <p>□ 점유자가 공유토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공유토지를 무단으로 점유시 교육청은 점유자 건물 재산권 포기, 철거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행정대집행 법에따라 행정대집행을 하고 구상권 청구할 수 있음.</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 건물소유자가 건물의 재산권 포기, 철거 동의한 것은 건물소유자가 공유토지상에 있는 건물의 소유권을 포기함으로써 사법상 건물 철거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사법상의 권리(=소유물방해 제거청구권)행사 일환으로 자체 철거할 수 있고 사법상 소유권 포기로 행정대집행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철거 비용 구상권은 청구할 수 없음.</p> <p>□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2조에 따라 행정대집행 가능. 계고 및 영장통지 사전절차를 생략하기 위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3조 제3항의 사유(‘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가 있어야 하고, 원상복구 의무자의 동의서로는 사전절차를 생략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원상복구 의무자가 동의서를 작성하였더라도 추후 비용 구상 등 문제 발생 시 동의서의 효력을 다투거나 행정대집행 절차위반을 다툴 우려가 있어 행정대집행법 절차로 진행할 것을 권함)</p> <p>□ 부동산에 대한 유지·보존행위는 부동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 하는 사실적 법률행위로 타인 소유의 건물 철거는(타인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유재산의 유지·보존을 위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31	사립유치원 적립금 사용 관련 자문 요청	<input type="checkbox"/> 당초 적립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적립금을 보전 하도록 원장(설립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렸을 때, 그 재원은 전액 원장(설립자) 사비로 마련해야 하는가?	<input type="checkbox"/> 설립자 보전 문구가 지침에 삽입된 것이 적립금 승인받은 일자보다 뒤의 일인 점과 원장의 사적 용도로 적립금을 사용하지 않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원장의 사비로 적립금을 보전하지 않아도 된다고 볼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음. 하지만 법령의 취지와 인천광역시 지침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적립금을 규정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에 대한 조치이므로 적립금 보전은 원장의 사비로 이루어져야 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시설적립금을 적립 목적 이외 용도 집행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 할 수 있음. 사립유치원 설립자(원장)가 적립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다면, 유치원 운영에 필요한 대금을 지급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적립금 보전은 원장의 사비로 이루어져야 함. (다만, 편의상 또는 관련 회계규정의 부지로 인하여 적립금에서 집행한 것일 뿐, 유치원 회계에서 통학 차량 및 교재 구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면 사비를 통한 보전 조치는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음) <input type="checkbox"/> 법령 및 규정의 문언적 해석, 유치원의 재정적 건전성 유지, 시정명령의 실효성 측면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시정명령에 의한 적립금 보전은 원장의 사비로 이루어져야 함. <input type="checkbox"/> 유아교육법에 의거 시정명령 후 불이행시 정원감축 등의 불이익 조치할 수 있음. 인천광역시 지침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적용되는 행정규칙으로, 지침에 의거하여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사용금액 전액 유치원장(설립자) 부과 통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납부명령 근거는 없어보임). 보전 시의 '재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으며, '보전'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도 찾을 수 없는바, 유치원장이 사비·운영비 어떤 방법으로든 사용목적 위반 사용금액을 전액 보전한다면, 그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사료되며, 목적위반 사용금액 전액을 사비 또는 운영비로 보전하지 않을 경우 직접적으로 강제할 근거는 없어 보임.</p> <p><input type="checkbox"/> 사립유치원 재정업무 처리지침은 행정규칙에 해당하며,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짐. 적립금 보전에 대한 내용이 유치원의 적립금 승인 이후에 이루어진 점,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사비로 적립금 보전은 이루어지지 않아도 되며, 유치원 운영비를 통해서도 보전할 수 있음.</p>
32	행정조사에서 취득한 자료를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학원법 13조에 대한 공개사항 중 일부항목을 비공개할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일부항목 비공개에 따라 벌점 부과가 가능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처벌 가능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처벌 가능 <input type="checkbox"/> 비공개 불가능 <input type="checkbox"/> 처벌 불가능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33	공사 계약 해지에 따른 사무처리와 관련한 법률자문 요청	<input type="checkbox"/> 공사대금에 대한 압류문서가 도달된후 공사계약이 해지되어 타절검사가 이루어진다면 공스타절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상계처리가 가능한지(갑설), 상계처리가 불가능한지(을설)	<input type="checkbox"/> (지급유보 가능)함지방계약법상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의무는 공사대금 지급의무보다 선행의무이므로, 본 건에 있어 공사업체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지급한 후에야 공사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귀청은 지급받지 못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만 지급하고, 하자보수보증금은 위 규정에 따른 담보책임 존속기간 동안 그 지급을 유보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함 <input type="checkbox"/> (갑설)질의사례에서 발주기간은 공사대금채권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할 수 있으며, 사실관계 중 지방자치단체가 타절기성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한 사례가 다수 있음. <input type="checkbox"/> (을설)도급업체가 재정상 및 신용상의 어려움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 또는 하자보수증권을 제출하지 못하여 타절기성금에서 이를 공제 처리할 것을 발주기관에서 요청하더라도 상계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지 아니한 이상, 발주기관은 공스타절 기성금에서 하자보수보증금 공제 처리를 할 수 없다고 판단함
34	사립학교 수익자 부담경비 관련	<input type="checkbox"/> 운동부 학부모회 상조회 비용을 교비회계 수익자 부담금에서 부담하도록 할 수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대법원 2023.3.16. 선고 2022두63744 판결의 요지를 다른 수익자부담금에 적용할 수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수익자부담금의 조성 목적 외 사용을 이유로 이를 회수하여 학부모에게 환불하도록 할 수 있는지	<input type="checkbox"/> 가능함(운동부 운용에 관한 학부모 회칙에 따라 적법하게 교비회계에서 집행되었다면 자녀운동을 위한 직접적인 비용은 아니더라도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 수 있을 것임) <input type="checkbox"/>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나 <input type="checkbox"/> 본 사안의 경우 학교에 이를 회수하거나 학부모에게 환불을 명하기는 어려움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input type="checkbox"/> 상조회성 비용 교비회계 부담 부적정 의견 <input type="checkbox"/> 수익자부담금 잉여금은 '학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나 교육 필요 시설·설비 경비 등' 특정 목적에 사용 <input type="checkbox"/> 상조회성 비용 교비회계 회수 적정, 학부모 환불 부적정 <input type="checkbox"/> 상조회성 비용 교비회계 부담 불가 <input type="checkbox"/> 적용하여 해석해야함 <input type="checkbox"/> 상조회성 비용 교비회계 회수 적정, 학부모 환불 부적정
35	행정조사에서 취득한 자료를 민원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학원법 제6조6항의 법조항을 해당처분을 받은 자가 아닌 자가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교습과정의 학원의 설립에도 적용되는지	<input type="checkbox"/> 적용되지 않음, 설립가능 <input type="checkbox"/> 적용되지 않음, 설립가능 <input type="checkbox"/> 적용되지 않음, 설립가능
36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관련	<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법」 제43조(겸직 등 금지) 제⑤항 관련하여 지방의회의원이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속기관인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에 겸직 가능한지 여부	<input type="checkbox"/> 시 교육청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볼 수 있어서, 교육청 직속 공공도서관이 인천시 운영비, 사업비 지원을 받는다고 봄에 따라 지방의회의원은 도서관운영위원회 위원에 겸직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인천광역시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인 인천광역시의 사무 중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한하여서 인천광역시를 대표한다는 차이만 있음. 인천광역시(대표자 교육감)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직속기관인 공공도서관의 경우, 지방의회의원은 당해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이 겸직이 불가하다고 사료됨.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 시 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에 포함될 수 있으며, 가사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육청 직속기관, 교육청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는 겸직이 바람직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그러나 2017년 조례에 명문상 지방의회 의원이 포함된다고 규정하였으므로, 조례 규정의 신설 취지 및 지방자치의 자율성 측면에서 볼 때, 이러한 조례의 조문이 항상 위법하게 된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유권해석은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고, 행정안전부의 해석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2차적으로 요청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점을 참고 바람.</p>
37	세탁물 위탁처리업체 화재에 따른 피해 보상과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	<p>□ 세탁물 위탁처리 업체에 화재가 2024. 3. 6. 발생하여 본원의 침구 1,578만원어치가 전소되었으나 업체가 가입한 보험회사에서 받은 보험금 중 205만원만 하겠다고 하여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법률적 방안 자문요청</p>	<p>□ 화재에 ○○○○의 과실이 있다면 ○○○○를 상대로 소제기 후 판결을 받아 ○○○○의 재산에 강제 집행하면 되는데, ○○○○의 재산이 없다면 배상받기는 어려워 보임.</p>
38	통학버스 계약과 관련한 업체의 협박성 민원	<p>□ 2024학년도 인천○○○학교 통학버스 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용역업무를 의뢰하여 진행 중, 적격심사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A업체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소송 중임을 인식함. 적격심사에 문제 소지가 없는지에 대해 조달청에 문의하였으나, 조달청 구매담당자는 본교가 질문한</p>	<p>□ 귀 학교의 조달청 용역계약 낙찰 1순위자인 A업체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소송 중인 사실을 인식하고, 수요기관으로서 용역계약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조달청 구매담당자에게 문의한 것 자체는 지극히 정당한 업무수행으로서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지 아니하고, 나아가 조달청 구매담당자가 귀 학교의 위와 같은 통화 내용을</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상황을 고스란히 업체에 전달함. 업무와 관련된 계약사항에 있어 당사자인 학교가 궁금한 사항을 질의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다만 조달청 구매담당자가 본교의 질의 사항을 업체에 고스란히 전달한 게 민원인에 대한 대처인지</p> <p>□ A업체와의 계약 체결 후 첫 운행부터 차의 시동이 안 걸려 운행을 못하여 학생 중 2명은 학부모가 데려오고, 2명은 운전기사가 본인의 차로 운행을 하여 데려왔음. 이에 본교는 미운행 사실과 또 다른 차량의 냄새, 연기 등 차 결함에 대한 공문을 업체 측에 발송함. 업체 사장은 전화로 공문을 육하원칙에 맞지 않게 보냈고 업체에서 조치한 사항은 왜 빠졌다며 민원을 제기하겠다는 등 언성을 높이며 전화로 화를 냄. 업체가 공문에 대한 추가 요청을 하면 학교에서도 수정 공문을 발송했을텐데 인격모독성 발언을 섞어 전화를 하는 업체에 대해 어떠한 대처를 해야 하는지</p>	<p>가감없이 그대로 전달한 행위는 - 비록 조달청 구매 담당자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하더라도 - 적절해 보이지는 아니하나, 그렇다고 딱히 위 조달청 구매담당자의 행위가 징계사유나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보기 어려움.</p> <p>□ 또한, 버스업체 사장이 귀 학교 직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통하여 지속적, 반복적으로 폭언을 계속한 경우에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행위자를 고소 또는 고발할 수 있고, 나아가 버스업체 사장의 위와 같은 행위가 객관적으로 공포심을 느끼게 할 정도에 이른다면, 형법상의 협박죄로도 고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p>
39	온비드 입찰 계약 체결 후 물량 차이로 대금 일부 반환 요구 시 지급 여부	□ 운동장 스탠드 등나무 지지용 철기둥을 온비드 입찰로 올려 낙찰받은 업체가 추정치로 공고된 물량과 실 중량의 차이를 이유로 차액분 반환 요청 시 반환 정당성 여부 검토	□ 공고 시 계약담당자는 매각 물량, 제품 상태 등을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하고, 공고의 내용이 실제 매각 물량, 제품 상태 등과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공고 시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제품상태를 확인하고 모든 책임은 투찰한 자가 책임진다고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내용은 부당한 특약(조건) 등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 광고 시 “방문하지 않고 낙찰이 되었을 경우, 실물 상태와 관련된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의사표시로 간주하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부분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부당한 특약 등’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학교 입장과 업체 입장 모두 가능</p>
40	<p>민원인의 학교 CCTV 증거보존 요청과 관련한 법률 자문 요청</p>	<p>□ 민원인이 정보주체가 아니고 민원인의 집도 영상에 포함되지 않은 CCTV 자료 열람을 허가해 주어도 되는가</p> <p>□ 민원인이 정보주체가 아니고 민원인의 집도 영상에 포함되지 않은 CCTV 자료의 보존 요청을 받아 들여 저장해도 되는가? 그리고 이 자료를 추후 민원인이 요청하였을 때 제공해도 되는가</p> <p>□ 민원인이 법원에 CCTV 증거보전 신청을 통해 영상 보전을 요청한다면 어떻게 응대해야 하는가</p> <p>□ 영상 열람을 허락해야 한다면 민원인이 부담해야 할 공사장 인부들에 대한 마스킹 작업 비용은 적정 기준이 있는가</p> <p>□ 공사와 관련한 민원 응대의 주체는 시공사와 교육청으로 알고 있다. 학교에서 CCTV 증거 보존 요청에 대한 대응 외에 민원인에게 응대할 의무가 있는가</p>	<p>□ 귀교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마목의 ‘공공기관’에 해당하므로,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주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됨. 동법 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동법 제3조에 따라 귀교가 보유·관리하는 정보(이 사안의 CCTV 영상)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사료됨. 다만, 이 사안의 CCTV 영상에는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보이므로, 그 공개를 엄격한 기준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p> <p>□ 민원인은 이 사안 CCTV 영상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 보임. 또한 민원인은 이 사안 CCTV 자료의 보존을 요청할 권리도 없어 보이므로, 법원의 ‘증거보전 결정’이 귀교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CCTV 자료를 보존할 의무는 없다고 사료됨. 혹시 귀교에서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CCTV 자료를 보존한다면, 법원에서</p>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p>영상제출명령이 있을 경우 민원인이 아닌 법원으로 제공하면 될 것임.</p> <p><input type="checkbox"/> 민원인이 법원에 CCTV 증거보전을 신청하면 법원에서 귀교로 관련 문서가 송달될 것임. 그럴 경우 귀교는 법원 문서가 송달된 시점에 CCTV 영상이 존재하면 법원에 제출하고, CCTV 영상이 존재하지 않으면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회신서를 보내면 될 것으로 사료됨.</p> <p><input type="checkbox"/> 마스크킹 작업 비용에 적정 기준은 따로 있지 않아 보임. 보통 법원에 증거로 제출되는 영상에 마스크킹 작업이 되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아 보임. 나아가 그 마스크킹에 따른 비용을 민원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근거 역시 찾기 어려움.</p> <p><input type="checkbox"/> 귀교의 급식실 공사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는 민원인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는 사과와 개인적인 요청에 CCTV를 제공하기는 어렵고 법원에서 CCTV 제공 명령이 오면 그에 따를 것이라는 정도의 안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음.</p>
41	제 3 자 단 가 계 약 취소여부	<input type="checkbox"/> 우수조달물품 계약해지에 따른 수요기관의 일방적 납품취소 가능여부와 사후 조치에 대한 확약서를 받을 경우 확약서의 법적 효력 유무	<input type="checkbox"/> 납품기관과의 별도 작성한 계약서에 취소 규정 요건 확인, 별도 계약서가 없을 경우 우수조달물품이 아니었다면 귀교는 계약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함. - 납품기관과의 확약서는 법적 효력있음.
42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input type="checkbox"/> 월세 보증금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input type="checkbox"/> 월세 보증금이 「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된다면 가액 산정 방법은	<input type="checkbox"/> 월세 보증금 은「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가액 산정: 보증금 거래가 전액 <input type="checkbox"/> 월세 보증금 은「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함

연번	구 분	개요 및 자문(질의)요지	답 변 요 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세 보증금 전액 / 실 거주기간에 비례하여 산정 / 월세 보증금에 대한 이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가액 산정: 「주택임대차보호법」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산정률을 적용한 금액 <input type="checkbox"/> 월세 보증금 은「청탁금지법」상 “금품등”에 해당함 <input type="checkbox"/> 가액 산정: 시중 정기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한 이자 상당 금액
43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영상 보관 관련 법률 자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CCTV 일부 영상을 USB에 담아 기관에서 보관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보관이 가능하다면 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input type="checkbox"/> 기관에서 보관이 가능할 경우 학부모가 준연구적으로 보관을 요청했는데 준연구적인 보관이 가능한지 <input type="checkbox"/> 현재 CCTV 영상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학부모 열람에 대한 동의서를 받았는데 CCTV 영상을 보관할 경우 보관에 대한 동의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지 <input type="checkbox"/> 보관할 때 비공개 비전자 등록 후 USB에 저장하여 문서고에 보관해도 되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당초 CCTV 영상 수집 목적 범위 내 행위이므로 법적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목적 외 이용의 경우 별도 근거가 필요함. <input type="checkbox"/>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60조, [별표 1]을 참고하여 정하면 될 것으로 준연구적 보관은 부적절하거나 불필요함. 민사상 불법행위의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형사상 과실치상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고, 통상 장애나 후유증 증상은 사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나타나므로, 최대 5년의 범위까지 보관하면 충분할 것으로 사료됨. <input type="checkbox"/> 당초 CCTV 영상 수집 목적 범위 내 행위이므로 동의서는 불필요할 것으로 보임. <input type="checkbox"/> 보관 방법에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닌바,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보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다만, 정보 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는바, 비밀번호 설정 등 보호조치를 강구하기 바람(표준 개인정보보호지침 제4조 제4항).